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가단217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9. 5. 20. 증여계약을 취소한다1) . 피고는 원고에게 4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18. 1. 17. 원고에게 40,72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 1) C는 2002.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C는 2019. 5. 3. D조합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3) C는 2019.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와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1) C와 피고는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너5075호로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9. 8. 26.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C)은 이혼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하고, 신청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신청인, 근저당권자 D조합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0원을 이 사건 조정성립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3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피신청인이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2020. 8. 7. C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년금제952호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1.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D조합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13, 14, 16,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40,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 나. 2)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와 C가 혼인 기간에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C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그 유지와 가치 증식에 협력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 21.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9. 8. 26.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혼한 점, ③ 결과적으로 피고와 C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C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C와 동거하며 사실상 배우자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이혼은 가장이혼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가 합의해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법원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참조).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신청사건(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년5075호)에서 2019. 8. 26. 피고와 C가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C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2, 3, 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C가 8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1989년경 이천시 E 지상 단독주택을 취득하였다가,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인 2002. 1. 23.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실제 매수대금도 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지급되었으며, 특히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33,000,000원의 경우 이를 모두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위 단독주택의 매각대금 등 비용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총당 ·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고와 C가 공동으로 적극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보인다.

② 2019. 5. 3.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268,997,76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C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 60,000,000원,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을 제외하면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198,997,760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라 C 앞으로 8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③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와 C가 이혼에 이르게 된 계기는 C가 피고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절제한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신뢰상실이었다고 보여, 피고와 C 간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책임은 C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임대호

별지목록

1. 경기도 이천시 대 172㎡

2. 경기도 이천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알씨조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소매점 및 주택

1층 소매점(알씨조) 94.72㎡

2층 주택(세멘벽돌조) 91.84㎡

1) 원고는 소장에 위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2022. 9. 27. 가액배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서 착오로 위 청구취지를 누락하였으나, 원고가 위 청구취지를 유지하려는 의사는 분명하므로 이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킨다.